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68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윤종균 · 홍기원 · 이연희
안태준 · 김주영 · 손명수
염태영 · 정준호 · 박용갑
부승찬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5의 제목 중 “표시”를 “표시 및 보고·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을 “정상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할인금액 등 충전 시 적용받는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충전요금 정보 표시, 보고, 공개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96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충전요금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충전요금 정보 표시, 보고, 공개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1. ~ 7. (현행과 같음)

9. 제96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